

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 외 20명

2. 제안이유

- 기업체, 근로자,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유입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기업체, 근로자,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인구유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인구정책 관련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7조, 제32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부서검토: 인구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특성에 맞게 근로자, 구미생활인구 등에 대한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, 상 위법령이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, 집행기관에서는 인구정책사업 추진 시 구미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사후 대응과 전입 인구에 대한 단순 지원 방안만이 아닌 구미시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타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학생 등 구미생활인구에 대한 전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